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3. 6. 18.(일) 11:00,
(지면) 2023. 6. 19.(월) 조간

배포 2023. 6. 16.(금) 오후

만 80세 미만 어르신까지 수산 경영이양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

- 6. 15.(목)~6. 29.(목) 경영이양직불제 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6월 15일(목)부터 6월 29일(목)까지 2주간 9개 지역에서 지자체 및 지역수협 관계자, 어촌계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영이양직불제 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설명회*를 진행한다.

* 전남(6.15, 6.21), 부산(6.16), 울산(6.20), 인천(6.22), 전북(6.23), 경기(6.26), 경남(6.27), 충남(6.28), 강원(6.29)

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후계 어업인 양성을 위해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고령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.

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청자의 연령 상한(75세→ 80세)과 계원자격 유지기간 변경 (10년→5년) 등 올해 4월 1일에 개정된 사항을 설명하고, 신청에 필요한 어촌계원 명부 및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 관련 제출서류 준비방법과 계원 자격 이양을 위한 어촌계 차원의 협조 사항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.

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“지속가능한 어업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업인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.”라며, “이를 비롯하여, 어업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미래산업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수산정책관	책임자	팀 장	강희정 (044-200-5451)
	수산직불제팀	담당자	사무관	김승아 (044-200-5470)

참고

경영이양직불제 개정 주요내용

□ (사업목적)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에 대한 소득 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사회 활성화 기여

□ (대상자) 신청일 이전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

* ('23.4.1.~'26.12.31) 계원자격 유지 기간 5년 이상, 상한연령 만 80세 미만 어업인 포함

□ (지급요건) 어촌계 총회 의결을 거쳐 60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어촌계 영구 탈퇴

— 소득증명을 위한 선정 신청년도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 구비

< 개정내용 '23.4.1 시행 >

구 분	종 전	개정 내용
신청연령	만 65세 이상~만 75세 미만	만 65세 이상~만 80세 미만 ('26.12.31.까지 한시적)
가입기간 (자격유지)	10년 이상 계속 유지	5년 이상 계속 유지 ('26.12.31.까지 한시적)
신청접수처	읍·면·동	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
이양대상	만 55세 이하	만 60세 이하
지급기간	10년 범위 내	최장 10년으로 하되, 85세까지

□ (지급기준) 직전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 소득(수입)을 기준

소득구간	200만원 이하	200만원 초과 ~ 2,400만원 이하	2,400만원 초과
지급액	연 120만원(정액)	연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%	연 1,440만원(정액)

□ (사업절차)

